

## 지방 아파트형공장 설립 활성화 된다

- 비수도권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면적 비율 대폭 확대 -

■ 비수도권 개별입지(산업단지 밖)에 설립되는 아파트형공장\*의 지원시설면적 비율이 현재의 30%에서 50%로 대폭 확대되어 비수도권에도 아파트형공장 설립이 크게 활성화 될 전망이다.

\* 아파트형공장: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 (산집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5)

※ 아파트형공장내 용도구분 : 산업시설(제조업, 지식산업, 정보통신산업), 지원시설(금융·보험·교육·의료·무역·판매업, 물류시설, 보육시설, 기숙사 등)

○ 산업자원부는 비수도권지역 아파트형공장설립 활성화를 위해 『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』을 개정하여,

○ 비수도권 개별입지에 설립하는 아파트형공장의 경우, 지원시설 면적 비율을 현행 100분의 30 이내에서 100분의 50 이내로 대폭 확대하여 개발자의 수익성을 높여 주기로 했다.

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면적 비율

입지구분	현행	개정(안)
산업단지 안	100분의 20 이내	좌동
산업단지 밖 (개별입지)	100분의 30 이내	○ 수도권 : 100분의 30 이내 ○ 비수도권 : 100분의 50 이내

\* 산집법 시행령제36조의4제3항

- 이는 그동안 아파트형공장설립이 분양수익성이 높은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(83%)되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산업용지 공급이 저조함에 따라,

**아파트형 공장 및 입주기업 분포 (07.1)**

(단위 : 개)

	수도권	비수도권	합계
아파트형 공장 등록 수	206 (83%)	42 (17%)	248
입주기업 수	5,287 (94.3%)	320 (5.7%)	5,607

<자료> 공장설립관리정보망(FEMIS)

- 생산시설구역 분양가의 약 2배 수준에 이르는 지원시설 구역 면적비율을 높여 비수도권 아파트형공장 개발자\*들의 수익성을 제고시켜,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유도하기 위함이다.

\* 아파트형공장 설립 주체는 민간건설업체, 국가·지자체, 한국산업단지공단, 중소기업진흥공단, 지방공사 등 다양 (산집법제28조제3항)

-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수도권에도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아파트형 공장 건설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영세중소기업들에게도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※ 그러나, 수도권 지역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이라도 산업단지안에 설립되는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는 현행 비율을 유지하기로 하였다.

- ▣ 금 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9월 28일 발표된 “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”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, 4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고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.

**【 불 임 】 아파트형공장 개요**

[ 붙임 ]

## 아파트형공장 개요

□ 정의

-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  
(산집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5)

□ 설립 현황

(‘07.1 현재)

지역	아파트형 공장 건수			입주기업 수		
	등록	승인	합계	등록공장	비제조업	합계
서울	93	53	146	1,954	2,669	4,623
경기	102	32	134	2,969	68	3,037
인천	11	4	15	364	38	402
부산	3	4	7	52	-	52
대구	1	3	4	7	-	7
광주	13	3	16	76	5	81
대전	5	4	9	18	-	18
울산	-	2	2	-	-	-
강원	1	-	1	5	-	5
충남	1	-	1	12	-	12
전북	1	3	4	-	-	-
전남	1	-	1	1	2	3
경북	2	1	3	4	-	4
경남	14		14	145	2	147
총계	248	109	357	5,607	2,784	8,391
수도권	206	89	295	5,287	2,775	8,062
비수도권	42	20	62	320	9	329

<자료> 공장설립관리정보망(FEMIS)

## □ 입주할 수 있는 시설(산집법제28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4)

### <산업시설>

- 제조업, 지식산업\* 및 정보통신산업\*\*, 기타 특정 산업의 집산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

#### \* 지식산업의 범위

자연과학 연구개발업, 엔지니어링 서비스업, 광고물 작성업,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,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, 전문디자인업 등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(산집법시행령제6조제2항)

#### \*\* 정보통신산업의 범위

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, 소프트웨어 자문·개발 및 공급업, 자료처리업,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,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, 전기통신업 등 정보의 수집·가공·저장·검색·송신·수신 및 그 활용과 그에 관련되는 기기·기술·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(산집법시행령제6조제3항)

-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

### <지원시설>

- 금융·보험·교육·의료·무역·판매업(당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)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
- 물류시설 기타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육시설 가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
- 건축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
  - \*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